



법인실무편

개인이 직접 상표등록 신청하는 방법

MIT Medi Information Teacher



한국경영전략연구소
Korea Management Building Institute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ermission of Korean Management Building Institute.

개인이 직접 상표등록 신청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하며 고민에 고민을 더해 애지중지 탄생시킨 내 회사와 상품의 이름. 대표님들에게 있어 자식과도 같은 이 이름들이 정당하게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다른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거나 별도의 청구항 작성 등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직접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변리사 비용을 걱정하시거나 방법을 몰라 망설이시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시며 한 단계씩 훈자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의 단계는 크게 사전조사, 출원, 심사,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출원자는 출원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수고롭지 않게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셀프 등록이 가능하도록 출원의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전후의 단계는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1. 출원전 사전 조사

내가 등록할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당연히 등록이 거절되겠죠?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검색해보세요.

2.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하기 (준비물 : 공동인증서, 상표 견본)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홈페이지(www.patent.go.kr, 특허로)를 이용하면 출원서 제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단계	특허고객등록 특허로 홈페이지의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승인까지 수일 소요)
2단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3단계	출원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제출” → “명세서/서식 작성” → “(출원서 등 서식작성)웹작성/제출”로 이동하신 다음 “상표” 카테고리에서 왼쪽 상단 “상표등록출원서” 클릭 ② “등록대상 입력방법” → “고시명칭만입력” 선택(특허청 고시 상품만을 지정하여 출원) ③ “등록대상” → 추가 버튼 → 등록대상 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를 여기서 선택하게 됩니다.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1~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상품류” 선택 → “유사군 코드” 선택 (선택된 코드가 상품세목에 표시) → “선택추가” 버튼 → “지정상품”으로 선택해두면 됩니다. - 본 과정은 내 상표가 보호받고 싶은 업종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비슷한 서비스 업체들이 선택한 상품분류를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상표유형 입력 : 우리가 등록하는 대부분의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색체로 결합된 ‘일반상표’입니다. ⑤ 수수료 확인 : 전자등록은 서면등록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2단계에서 특허청에 고시되어 있는 상품만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앞서 선택한 상품류 하나당 5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⑥ 상표 견본 등록 : 일반상표는 A4 용지크기 안에 견본상표 이미지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그 외의 상표유형의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의 FAQ에서 ‘상표 견본은 어떻게 기재하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온라인제출
4단계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농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까지 마치셨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심사/등록과정

①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냅니다.

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 최종 등록결정 합니다.

② 등록료 납부

상표권 등록시 10년분의 등록료로 지방세(9,120원) 포함 220,120원의 설정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③ 의견제출통지서 처리

만약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나의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럴 경우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후는 출원공고 과정과 같습니다.

자! 이제 내 상표권이 등록되었습니다.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특허로 사이트 화면을 보시며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상표등록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루지 마시고 내 상표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